



山林稅制 안내

산림경영상 알아야 할 임업세제와 관련한 관계법규를 발췌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法人稅

課稅對象

各事業年度の所得에 대하여 賦課

法人稅法 第2條

第2條(課稅所得의 範圍) ① 法人稅는 다음各號에 掲기하는 所得에 對하여 이를 賦課한다.

1. 各事業年度の 所得
2. 清算所得

② 非營利內國法人과 外國法人에 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清算所得에 對한 法人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免除對象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業에 의하여 새

로이 造林한 山林과 採種林, 保安林 및 天然保護林으로서 造林한 期間이 5年以上인 것을 伐採 또는 讓渡함으로써 發生한 所得

租減法 第38條

第38條(山林開發所得에 對한 所得稅 등의 免除) ① 內國인이 山林法에 의한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業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山林과 採種林·保安林 및 天然保護林으로서 그가 造林한 期間이 5年以上인 것을 伐採 또는 讓渡함으로써 發生한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免除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額의 免除를 받고자 하는 內國인은 課稅標準申告書와 함께 稅額免除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세액계산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결손금 - 비과세소득 - 증자소득 (법인세법 제 8 조)
- 세 율

區 分	課稅標準金額	稅 率
上場法人	8千萬元 以下	課稅標準額의 100분의 20
	8千萬元 超過	1千6百萬元 + 8千萬元을 超過하는金額의 100분의 30
非上場法人	8千萬元 以下	課稅標準額의 100분의 20
	8千萬元 超過	1千6百萬元 + 8千萬元을 超過하는金額의 100분의 33
非營利法人	8千萬元 以下	課稅標準額의 100분의 20
	8千萬元 超過	1千6百萬元 + 8千萬元을 超過하는金額의 100분의 27

※ 法人稅法 第22條 第1項, 2項 및 第4項

○손비인정

인건비, 운영비등 주로 당해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所得稅

— 課 稅 對 象 —

個人的 所得發生時 賦課

— 所得世法 第24條 第1項 —

第24條 (山林所得) ① 山林所得은 造林한 期間이 5年 以上인 林地의 林木의 伐採 또는 讓渡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으로 한다.

— 免 除 對 象 —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業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山林 (採種林, 保安林 및 天然保護林 包含)으로서 그가 造林한 期間이 5年 以上인것을 伐採 또는 讓渡時 發生하는 所得은 所得稅 免除

— 租 減 法 第38條 —

第38條 (山林開發所得에 對한 所得稅등의 免除) ① 內國人이 山林法에 의한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業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山林과 採種林·保安林 및 天然保護林으로서 그가 造林한 期間이 5年 以上인 것을 伐採 또는 讓渡함으로써 發生한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免除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額의 免除를 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課稅標準申告書와 함께 稅額免除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세액계산

- 과세표준 : 당해년도 총수입액 - 필요경비 (임지를 제외한 취득에 필요한 비용 + 식립비 + 관리비 + 벌채비 + 기타 산림 육성·양도에 소요되는 비용) - 특별공제 150만원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동법 제31조 동법 제4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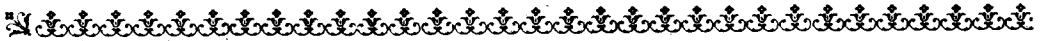
- 세 율 : 과세표준액 250만원까지는 100분의 5이며 8 단계로 구분차등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讓 渡 所 得 稅

— 課 稅 對 象 —

資産의 讓渡로 發生하는 所得에 對하여 賦課

— 所得稅法 第23條 —



第23條(讓渡所得) ①讓渡所得은 當該年度에 發生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1. 土地 또는 建物の 讓渡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2. 大統領令이 定하는 不動産에 관한 權利의 讓渡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3. 第1號 및 第2號 이외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資産(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讓渡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 免 除 對 象 —

'86. 12. 31現在 山林地를 所有한 者가
'91. 12. 31까지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姊妹인 自耕 農民에게 그 所有保全林地 中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地에 造林한 後 期間이 5年 以上인 造林地(保安林, 採種林, 天然保護林 包含) 9萬坪 以內를 讓渡 時

— 租減法 第67條의 6 —

第67條의 6 (自耕農民에게 讓渡하는 農民등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 ① 다음 각호에 該當하는 農地·草地·山林地(이하 “農地 등”이라 한다)를 1986年12月31日 現在 所有하는 者가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姊妹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自耕農民(이하 “自耕農民”이라 한다)에게 그 所有農地등을 1991年 12月31日까지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를 免除한다.

1. 相續稅法 第11條의 3 第1項 각호의 1에 該當하는 農地 등
 2. 都市計劃法 第17條에 規定하는 住居地域·商業地域 및 工業地域외에 所在하는 農地 등
- ※ 相續稅法 第11條의 3 第1項(農地·

草地·山林地의 相續控除)

① 1~2 省略

3. 山林法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中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業에 따라 새로이 造林한 期間이 5年 以上인 9萬坪 以內의 山林地(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의 山林地를 包含한다.)

○세액계산

- 과세표준 :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액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액) - 150만원 (양도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제23조)
- 세율 : 과세표준액 30백만원까지는 100분의 40이며, 5 단계로 구분 차등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特 別 附 加 稅

— 課 稅 對 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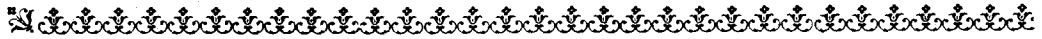
- 法人이 土地, 建物과 不動産에 關한 權利(이하 土地등 이라 한다)의 讓渡로 인하여 發生한 讓渡差益에 對하여 賦課
- ※ 讓渡 : 土地등에 對한 登記에 關係없이 賣渡, 交換, 法人에 對한 現物出資 등으로 그 土地등이 有償으로 事實上 移轉된 것

— 法人稅法 第59條의 2 —

- 讓渡差益은 讓渡價額(讓渡價額과 取得價額 不分明時 大統領令이 定한 基準市價)에서 - 取得價額 - 土地등 讓渡하기 爲한 直接 支出費用

— 免 除 對 象 —

- 破産宣告에 의한 處分으로 發生한 所得



- 讓渡時까지 8年 以上 繼續하여 當該法人이 耕作한 土地로서 農地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土地를 都市計劃 및 換地處分 豫定日부터 1年 以內의 土地를 讓渡하여 發生한 所得
- 法人이 直接 耕作하던 農地의 交換, 分合으로 發生한 所得

法人稅法 第59條의 3

業地에 새로 造林한 期間이 5年 以上인 9萬坪 以內의 山林地(保安林, 採種林, 天然保護林 包含)

※ 控除限度額: 1億1千萬원

- ② 保全林地중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業地에 새로 造林한 期間이 5年 以上인 林木(保安林, 採種林, 天然保護林 包含)

相續稅法 第11條의 3, 4

○세액계산

- 과세표준: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시 직접 지출비용)
- 세율
 - 미등기 양도토지: 과세표준액(양도차익)의 40%
 - 기타양도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25% (법인세법 제59조의 4)

第11條의 3 (農地·草地·山林地의 相續控除)

① 1~2 省略

3. 山林法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중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業에 따라 새로이 造林한 期間이 5年 以上인 9萬坪 以內의 山林地(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의 山林地를 包含한다)

② 第1項의 控除額은 第5條, 第11條 및 第11條의 2의 規定에 의한 控除額(第11條 第1項 第4號 및 第5號와 第11條의 2 第2項 단서의 規定에 의한 控除額을 包含하지 아니한다)을 합하여 1億1千萬원을 限度로 한다.

相續稅

課稅對象

相續財產에 對하여 賦課

相續稅法 第2條

第2條(相續稅課稅物件의 범위) 被相續人이 國內에 住所를 둔 때에는 相續財產(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產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効力이 發生하는 贈與財產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의 全部에 대하여 相續稅를 賦課한다. 被相續人이 國內에 住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國內에 있는 相續財產에 대해서만 相續稅를 賦課한다.

第11條의 4 (山林相續控除) 國內에 住所를 둔 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된 境遇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被相續人의 相續財產 價額에 山林法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안의 山林중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業에 따라 새로이 造林한 山林으로써 造林期間이 5年 以上인 山林(保安林, 採種林, 天然保護林을 句舍한다)의 價額이 包含되어 있을 때에는 第4條의 課稅價額에서 이를 控除한다.

控除對象

- ① 保全林地중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

○세액계산

-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 피

상속인의 장례비 200만원 - 채무액 - 기
초공제 1천만원 - 인적공제 - 주택공제
- 농지, 초지, 산림지 공제 - 임목공제
(상속세법 제12조)
- 세율: 과세표준 300만원까지는 100분
의 5이며 8 단계로 구분 차등세율 적용
(상속세법 제14조)

贈 與 稅

課 稅 對 象

贈與를 받은 贈與財産에 對하여 賦課
相續稅法 第29條의 4 第1項

第29條의 4 (贈與稅課稅價額) ① 贈與稅는
贈與를 받은 當時의 贈與財産價額의 合
計額을 그 課稅價額으로 한다.

免 除 對 象

'86. 12. 31 現在 山林地를 所有한 者가
'91. 12. 31까지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
妹인 自耕農民에게 保全林地중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地(保安林, 採種林, 天然保
護林 包含)에 造林後 5年 以上인 9萬坪
以內의 山林地를 贈與時 免除
※ 營農 1子女에 贈與時도 免除

租減法 第67條의 7, 8 第1項

第67條의 7 (自耕農民이 贈與받은 農地등
에 對한 贈與稅 免除)

① 第67條의 6 第1項 각호에 該當하는
農地등을 '86. 12. 31 現在 山林地를 所
有한 者가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妹인
自耕農民에게 그 所有農地등을 1915年
12月31日까지 贈與하는 境遇에는 當該農

地등의 價額에 對한 贈與稅를 免除한다.
第67條의 8 (營農 1子女가 贈與하는 農地
등에 對한 贈與稅 免除)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耕하는 農民이 第67條의 6 第1
項 각호에 該當하는 農地등을 直系尊屬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農에 從事하는
1子女(이하 이 條에서 “營農 1子女”라
한다)에게 贈與하는 境遇에는 當該農地
등의 價額에 對한 贈與稅를 免除한다.

○세액계산

-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
제 (배우자직계 존·비속은 150만원,
기타친족은 100만원)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세율: 과세표준액 150만원까지는 100
분의 5이며, 8 단계로 구분 차등세율
적용

(상속세법 제31조의 2)

土地超過利得稅

課 稅 對 象

遊休土地등에서 發生하는 超過利得에 對
하여 賦課

土地超過利得稅法 第3條

第3條 (課稅對象) ① 土地超過利得稅는 遊
休土地등으로 부터 發生한 土地超過利得
에 對하여 賦課한다.

② 遊休土地등의 判定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課稅期
間終了日 現在의 事實上의 現況에 의한
다. 다만, 事實上의 現況이 分明하지 아
니한 境遇에는 公簿上의 登載現況에 의
한다.



③課稅期間 終了日 現在 遊休土地 등에 該當하는 土地로서 當該 課稅期間중에 遊休土地등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期間이 있는 境遇에는 當該期間의 土地超過利得에 대하여는 土地超過利得稅를 賦課하지 않 니한다.

—免 除 對 象—
 個人：• 寺殺林, 洞有林, 軍事施設保護區 域內的 林野, 保安林, 採種林, 試驗林, 天然保護林
 • 保全林地內的 林野로서 營林計劃 認可를 받아 施業중인 林野와 特 殊開發地域으로 指定된 林野(都 市計劃에 編入된 날로부터 1年 이 經過된 것은 除外)
 • 自然保存地區 및 自然環境地區 안의 林野
 • 宗中이 所有하고 있는 林野(都市 計劃에 編入된 날로부터 1年이 經過된 것은 除外)
 (土地超過利得稅法 第8條 第1 項 第7號)
 法人：林業을 主業으로 하는 法人이 所有 하는 保全林地內的 林野로서 營林 計劃 認可를 받아 施業중인 林野 (都市計劃區域에 編入된 날로부터 1年이 經過된 것은 除外)
 (土地超過利得稅法 第9條 第3項 第4 號)

第8條(個人所有 土地중 遊休土地등의 범 위) ①個人이 所有하는 土地로서 土地 超過利得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遊休土地 등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土地로 한다.

- 1~6 省略
- 7. 다음 各目的 1에 해당되는 것을 除 外한 林野
 - 가. 寺殺林·洞有林
 - 나. 軍事施設保護法에 의한 軍事施設 保護區域안의 林野
 - 다. 山林法에 의하여 指定된 保安林· 天然保護林·採種林·試驗林
 - 라. 山林法에 의한 保全林地안에 있는 林野로서 同法의 規定에 의한 營林 計劃 認可를 받아 施業중인 林野와 特 殊開發地域으로 開發된 林野 다만, 都市計劃區域안의 林野로서 都市計劃 區域에 編入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 하는 期間이 經過된 林野를 除外한 다.
 - 마.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保存地區 및 自然環境 地區안의 林野
 - 바. 文化財 保護法에 의하여 指定된 文 化財保護區域안의 林野
 - 사. 宗中이 所有하고 있는 林野
 다만, 都市計劃區域안의 林野로서 都市計劃區域에 編入된 날부터 大統 領令이 정하는 期間이 經過된 林野 를 除外한다.
 - 아. 기타 公益上의 必要에 의하여 土 地超過利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할 相 當한 理由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 令이 정하는 林野(未制定)

第9條(法人所有 土地중 遊休土地등의 범 위) ①法人이 所有하는 土地로서 土地超 過利得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遊休土地등 은 그 法人이 固有業務에 정당한 事由없 이 直接 使用하지 아니한 土地로 한다.
 ②省 略
 ③ 다음 各호의 1에 해당하는 土地는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固有業務에 直接使用하지 아니하는 土地로 본다.

1. 第8條 第1項 第1號·第2號·第6號 및 第8號 내지 第13號에 該當하는 土地

2. 第8條 第1項 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土地 외에 建築物이 定着되어 있는 土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該當하는 土地(住宅의 附屬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除外한다)

가. 建築物의 面積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面積을 超過하는 土地

나. 建築物附屬土地의 價額에 대한 建築物의 價額의 比率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에 未達하는 土地

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許可 建築物의 附屬土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農地

가. 農業을 主業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農地의 價額에 대한 1年間의 收入金額의 比率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에 未達하는 農地

나. 特別市·直割市 및 市地域의 都市計劃區域(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除外한다)안에 있는 農地. 다만, 特別市·直割市 및 市地域의 都市計劃區域에 編入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이 경과되지 아니한 農地를 除外한다.

4. 林野. 다만, 林業을 主業으로 하는 法人이 所有하는 山林法에 의한 保全林地안에 있는 林野로서 同法의 規定에 의한 營林計劃認可를 받아 施業중인 林野(都市計劃區域안의 林野로서 都市計劃區域에 編入된 날부터 大統領令

이 정하는 기간(1年)이 경과된 林野를 除外한다)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林野(未制定)를 除外한다.

• 附則 第4條(法人이 정하는 産業備林用 林野에 관한 經過措置) 山林法에 의하여 産業備林의 所有命令을 받은 法人이 이 法 施行전에 所有하는 産業備林用 林野로서 産業備林所有基準上의 最小面積 이내의 林野는 第9條 第3項 第4號를 適用함에 있어서 林業을 主業으로 하는 法人이 所有하는 林野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8조(주업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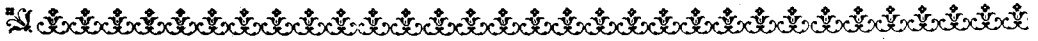
①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조 제3항 제3호 각목 제4호 단서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업은 수입금액(법 제9조 제3항 제4호 단서의 경우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9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의한 주업에는 당해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그 농업과 제조업등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금액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법인소유 임야) ① 영 제28조 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총 자산가액중 당해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 제3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야중 유희토지등에 해당하는 임야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영 제27조 제



3항에 규정된 기간(1년)이 경과된 임야로 한다.

○세액계산

-과세표준 : 과세기간이 끝나는데 12/31의 땅값(건설부장관 공시지가) -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해 1/1의 땅값(건설부장관 공시지가) -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국세청장 고시) - 개량비, 자본적지출등(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세율 : 과세표준액의 50%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과세기간 : 3년 단위(정상지가의 1.5배 이상 상승 지역은 1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조)

綜合土地稅

課稅對象
'90. 1. 1부터 地籍法에 의한 모든 土地에 대하여 賦課
— 地方稅法 第234條의 8 —

第234條의 8 (課稅對象) 綜合土地稅의 課稅對象은 地籍法에 의한 모든 土地로 한다.

免除對象
• 寺刹林, 洞有林, 民統線北方地域林野, 軍事保護區域內的 林野
• 保安林, 採種林, 試驗林, 天然保護林
•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保護區域內的 林野
• 地籍法에 의한 墓地
— 地方稅法 施行令 第194條의 8, 7 —

第194조의 8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234조의 12 제 7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사찰림, 동유림
2.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로를 제외한 토지
3.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4.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
6.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되는 노인정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만, 토지의 일부를 노인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 194조의 7 (비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 : 지적법에 의한 묘지

分類 課稅對象
• 保全林地內的 林野로서 營林計劃 認可를 받아 施業중인 林野와 特殊開發地域으로 指定된 林野(단, 都市計劃區域內的 林野는 除外)
• 文化財保護區域內的 林野
• 自然環境地區內的 林野
• 宗中이 所有하는 林野(90. 5. 31 이전 취득분)
— 地方稅法 施行令 第194條의 15 —

○세액계산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6. 1) 현재 전국의 모든 토지의 가액

-세율 : 과세표준(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에 따

라 세율이 상이하며,
분리과세 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
용지·임야는 과세표준액의 0.1%, 골
프장·별장등은 과세표준액의 5%임
(지방세법 제234조의16)

- 종합합산과세 : 주택지·나대지·잡종
지·부채지주농지·법인소유농지·영림
계획 미작성임야등은 소유자별로 합산
하여 과세표준액 5백만원 이하일 때
0.2%부터 최고 5%까지 10단계의 누
진과세(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 별도합산과세 : 사무실·상가·호텔·백
화점등 모든 영업용 건축물이 있는 토
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0.3%~ 최
고 5%까지 9 단계의 누진과세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

- 분리과세

- 농민의 자경농지·목장용지·임야중
보전임지내의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및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단, 도시계획구역 내의
임야는 제외)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임
야, 자연환경 지구내의 임야
중중이 소유하는 임야('90. 5. 31 이
전취득)등은 0.1%
- 골프장, 별장등 사치성 토지는 5%
- 위의 분리과세 대상외의 토지 및 내
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공
장용지는 0.3%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取得稅

課稅對象

- 不動産, 車輛, 重機, 立木 또는 航空機
의 取得

- 建築物의 增·改築 土地의 地目變更
- 寡點株主의 所有株式 또는 持分에 對한
當該法人의 不動産等

— 地方稅法 第105條 —

○ 用語의 定義(地方稅法 104條)

1. 不動産 : 土地, 建築物, 船舶, 鑛業
權 및 漁業權
2. 立木 : 地上의 果樹, 林木과 竹木
3. 土地 : 地籍法에 의한 土地
(田·畓, 果樹園, 牧場用地, 林野, 堡,
工場用地, 公園, 運動場, 史蹟地, 墓地,
雜種地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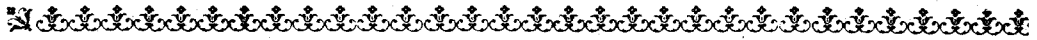
— 免除對象 —

- 다음 法人이 그 固有業務에 直接 使用
하기 爲하여 取得하는 財産(단, 1年以
內에 目的變更時 追徵)
- 農協(單位組合), 水協(漁村契·地區
別·業種別·水產物製造協同組合),
畜協, 農地改良組合
- 山林契, 山林組合, 山林組合中央會
- 勞動組合, 人蔘協同組合等

— 地方稅法 第110條의 3 —

— 非課稅對象 —

- 國·道·市·郡, 地方自治團體組合과
外國政府의 取得
- 地方稅法 第106條
- 祭祀·宗教·慈善·學術·技藝·其他 公
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非營利事業者가 그 事業에 直接
使用하기 爲한 取得等
- 地方稅法 第107條
- 지붕改良을 爲한 改築 其他의 取得
- 鑛山用에 供하기 爲한 地上林木의 取



得 등

- 土地收容 등으로 인한 代替 取得
- 形式的인 所有權의 取得 등
 - 法人의 合併 또는 共有權의 分離로 인한 取得
- 大都市외로의 移轉工場 등

— 地方稅法 第108條~110條의 2 —

— 50% 減免對象 —

- 다음 法人이 그 固有의 業務에 直接使用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財産(단, 1年 以內에 目的變更時 追徵)
 - 證券監督院, 保險監督院, 韓國放送公社, 信用保證基金管理機關
 -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産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등
 - 農業를 主業으로 하는 者가 2年 以上 營農에 從事한 者. 또는 農漁民後繼者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其準에 따라 直接 耕作目的으로 取得하는 農地(田, 畓, 果樹園, 牧場用地) 및 關係法令에 依據 農地를 造成할 目的으로 取得하는 林野. 다만, 林野取得後 2年 以內에 農地造成하지 않을 시 輕減取得稅 追徵
 - 農水産物流通公社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에 直接使用하기 爲하여 取得하는 不動産 등 등

— 地方稅法 第110條의 4 —

○세액계산

-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조례, 신고 大統領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 기타 사실상 취득가액 등) (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 : ① 취득물건 가액의 2%
② 大統領령이 정하는 별장, 골

프장, 고급주택, 법인의 비업 무용 토지 등 15%

- ③ 大統領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에 공장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취득시 10% (지방세법 제112조)

- 세율 적용 : 법인이 토지취득후 5년 이 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는 15% 추징(지방세법 제112조의3)

登 録 稅

— 課 稅 對 象 —

財産權 其他 權利의 取得·移轉, 變更 또는 消滅에 關한 事項을 公簿에 登記 또는 登錄時

— 地方稅法 第124條 —

— 免 除 對 象 —

- 取得稅 免除對象 法人의 登記 또는 登錄
 - 山林契, 山林組合, 山林組合中央會 (登記, 登錄日부터 1年 以內에 正當한 事由없이 目的變更時 登錄稅 追徵)
 - 山林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特殊開發地域안에서 山林開發을 目的으로 取得한 山林의 登記(다만, 山林開發義務 不履行時 登錄稅 追徵)

— 地方稅法 第128條의 2 —

— 非課稅 對 象 —

- 國家, 地方自治團體가 자기를 爲하여 하는 登記 또는 登錄
- 登記, 登錄機關의 職權登記, 登錄
 - 地方稅法 第126條
- 祭祀·宗教·慈善·學術·技藝·其他公



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非營利事業者가 그 事業에 直接 使用하기 爲한 不動産 登記(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大都市内の 登記는 除外)

※ 登記, 登録後 1年以内に 定當한 事由없이 全部 또는 一部를 目的變更時 그 部分에 對하여는 登録稅 賦課

- 地方稅法 第127條

○土地收容 등으로 인한 代替取得 登記

- 地方稅法 第127條의 2

○信託으로 인한 財産權의 取得 및 其他 登記, 登録時

- 委託者로 부터 受託者에게 移轉하는 財産權 取得의 登記, 登録
- 法人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合併 登記
- 會社의 整理等

- 地方稅法 第128條

錄(登記, 登録日로부터 1年以内に 定當한 事由없이 目的 變更時 減免 登録稅 追徵)

○農協, 水協, 畜協中央會

— 地方稅法 第128條의 3 —

— 50% 減免對象 —

○取得稅 50% 減免 對象 法人의 登記, 登

- 세액계산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실취득가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
 - 등록세율
 - ① 상속에 의한 취득 : 농지 0.3%, 기타 0.8%
 - ② 무상취득 : 부동산의 1.5%
 - ③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소유권 취득 : 부동산의 0.8%
 - ④ 기타 취득 : 농지 1.0%, 기타 3%
 - ⑤ 소유권보존등기 : 0.8%
 - ⑥ 가등기 : 0.2%

○ 林業分野 主要稅制上 支援內容 (要約)

惠澤	對 象	根 據
所得稅免除 (法人 : 法人稅)	조립후 5년 이상인 林木 - 영림계획, 지정개발사업 -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 산림소득특별공제 150만원	조감법 제38조
讓渡所得稅免除 (法人 : 特別附加稅)	조립후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 林地 - '86. 12. 31 현재 소유자가 '91. 12. 31까지 양도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지정개발지 -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조감법 제67조의 6
	○법인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법인이 소유임야의 交換, 분습으로 발생한 소득	법인세법 제59조의 3
相續稅控除	조립후 5년 이상인 林地(9만평 이내), 林木 (공제한도 없음) -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指定開發地 -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 공제한도액 : 1억 5천만원	상속세법 제11조의 3, 4